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처분 지자체에 교부 등〉

■ 변재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434호)

2021.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시 환경피해 고려	2
2.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처분 지자체에 교부	6

I. 제안경위

2021년 7월 9일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1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 징수 권한을 각각 시·도지사와 한국환경공단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은 시·도지사가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70%를 교부받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는 한국환경공단이 교부받도록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으나 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전액 국가에 귀속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사업장폐기물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시·도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할 때 배출 시·도를 벗어나 처리되는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해당 지역의 환경 피해를 고려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환경 개선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

Ⅲ. 검토의견

1.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시 환경피해 고려

개정안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시 고려사항에 시·도를 이동하여 처리되는 폐기물로 인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도에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② (생략)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u>비용</u> 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처분한 폐기물의 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 ----- ----- ----- <u>비용과 시·도를 이동하여 처리되는 폐기물로 인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도에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u> ----- ----- ----- -----.
<이하 생략>	<이하 생략>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소각 또는 매립하는 폐기물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시 고려사항으로 소각 또는 폐기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을 부과하고 있음.

[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폐기물 분류		매립	소각
생활폐기물		15원/kg	10원/kg
사업장폐기물	가연성	25원/kg	10원/kg
	불연성	10원/kg	-
건설폐기물		30원/kg	10원/kg

[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3,283 (1,892)	204,283 (25,624)	187,861 (31,729)
사업장폐기물	3,283 (1,892)	139,374 (25,314)	121,799 (31,406)
생활폐기물	-	64,909 (310)	66,062 (323)

※ ()는 사업장 수

※ 환경부 제출자료

개정안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시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한 시·도에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고려해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폐기물 배출 시·도를 벗어나 처리되는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당

지역의 환경피해를 보전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

폐기물 발생지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생활폐기물은 80.9%, 사업장폐기물은 65.4%로, 즉 생활폐기물의 19.1%, 사업장폐기물의 34.6%가 폐기물 배출 시·도를 벗어나 처리되고 있음.

특히,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발생지 처리율이 2.4%부터 96.2%까지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큰 편이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표] 폐기물 발생지 처리 현황(2018)

구분	계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발생량(톤)	발생지 처리율 (%)	발생량(톤)	발생지 처리율 (%)	발생량(톤)	발생지 처리율 (%)
전국	17,063,495	66.8	17,063,495	80.9	145,763,671	65.4
서울	3,134,219	9.8	3,134,219	42.4	13,853,682	2.4
부산	1,020,467	53.3	1,020,467	68.1	6,611,359	51.0
대구	933,232	24.9	933,232	68.0	3,999,532	14.8
인천	724,562	66.7	724,562	94.5	9,210,361	64.5
광주	400,223	55.4	400,223	95.0	2,061,838	47.7
대전	509,540	58.3	509,540	94.5	2,500,261	50.9
울산	490,633	67.2	490,633	100.0	4,687,146	63.8
세종	116,691	37.4	116,691	72.2	1,082,251	33.6
경기	3,599,375	71.7	3,599,375	89.2	27,482,701	69.4
강원	732,774	83.9	732,774	82.8	5,051,965	84.1

구분	계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발생량(톤)	발생지 처리율 (%)	발생량(톤)	발생지 처리율 (%)	발생량(톤)	발생지 처리율 (%)
충북	698,866	74.7	698,866	98.7	5,804,977	71.8
충남	827,711	84.1	827,711	95.9	19,644,632	83.6
전북	691,712	83.0	691,712	92.3	5,712,904	81.9
전남	636,268	90.1	636,268	98.8	11,745,029	89.6
경북	946,956	84.0	946,956	98.2	13,504,806	83.0
경남	1,248,337	72.4	1,248,337	93.8	11,393,091	70.0
제주	351,933	97.0	351,933	100.0	1,417,136	96.2

※ 환경부 제출자료

다만,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동 취지를 고려할 때 소각 또는 폐기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외 다른 고려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폐기물 종류, 처리시설 위치·규모, 처리 방법 등에 따라 환경영향이 달라지므로 이를 정량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처분 지자체에 교부

개정안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 권한의 위임·위탁 시 징수된 부담금의 일부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하고, 대신에 징수한 부담금의 일부를 폐기물을 처분한 시·도에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8항 개정 및 제10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 ~ ⑦ (생략)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⑧ ----- ----- ----- ----- -----위탁할 수 있다.
⑨ (생략) <신설>	⑨ (현행과 같음) ⑩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처분한 시·도에 교부하여야 한다.

현행법령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 권한을 각각 시·도지사과 한국환경공단에 위임·위탁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경우 징수한 시·도지사가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교부받고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10%를 교부받도록 정하고 있음.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하여 폐기물을 처분한 지자체의 해당 지역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이 시·도간에 이동하여 처분되거나 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는 관련 폐기물처분부담금이 폐기물을 처분한 지자체에는 교부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징수한 부담금의 일부를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하여 폐기물을 처분한 지자체에 교부하려는 것으로, 폐기물 배출 시·도를 벗어나 처리되는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당 지역의 환경피해를 보전하고, 징수한 부담금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환경개선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표] 개정안에 따른 부담금 교부액 변경

구분	현행	개정안
생활 폐기물	㉠ (징수한 시·도) 징수비용 및 사업비 70% →시·도 자원순환특별회계 교부	~~㉠ (징수한 시·도) 징수비용 및 사업비~~ → ~~시·도 자원순환특별회계 교부~~
	㉡ 환경개선특별회계 귀속 30%	㉡ (처분한 시·도) 사업비 →시·도 자원순환특별회계 교부
		㉢ 환경개선특별회계 귀속
	㉠+㉡ = 100%	㉠+㉡+㉢ = 100%
사업장 폐기물	㉠ (환경공단) 징수비용 10%	~~㉠ (환경공단) 징수비용~~
	㉡ 환경개선특별회계 귀속 90%	㉡ (처분한 시·도) 사업비 →시·도 자원순환특별회계 교부
		㉢ 환경개선특별회계 귀속
	㉠+㉡ = 100%	㉠+㉡+㉢ = 100%

다만, 개정안은 안 제21조제8항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 권한의 위임·위탁 시 징수된 부담금의 일부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하고 있는데, 징수 권한의 위임·위탁에 수반되는 징수비용은 보전해줄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 근거는 현행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의 문구를 그대로 해석할 때 개정안은 폐기물이 시·도 간에 이동하지 않고 해당 시·도 내에서 처분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폐기물을 처분한 지자체에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다시 폐기물을 처분한 지자체에 돌려주는 것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한편,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이 배출 시·도를 벗어나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폐기물 배출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입장으로¹⁾, 이와외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폐기물이 처리된 지역에 한해 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 6788-5542

1) 이와 관련하여 관할구역 외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한 시·군·구청장이 폐기물을 배출한 시·군·구청장에게 반입협력금(반입수수료 2배 이내)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발의, '21.4.29.)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